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천하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15

발의연월일: 2025. 1. 24.

발 의 자:천하람·주철현·김교흥

이용우 • 이주영 • 김종민

이준석 • 김상욱 • 정성호

박희승 • 이인선 • 이개호

김주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시 근로자와 기업이 미리 납입·기 여하여 형성한 목돈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근로 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규정하여, 중소·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·중견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있고, 중소·중견기업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.

그러나 의무 납입 기간인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공제 가입을 해지할 경우 귀책의 귀속과 무관하게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 어 일방적인 해고, 폐업 등의 기업 귀책으로 발생한 해지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기업 기여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 감면 특례를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기업이 폐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

여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어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고,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6제1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해당 기업이 폐업·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여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어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본문에 따라 세액을 감면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6(중소기업 청년근로자	제29조의6(중소기업 청년근로자
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	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
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)	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)
①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	①
법」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	
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	
과보상기금(이하 이 조에서	
"성과보상기금"이라 한다)의 공	
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	
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	
는 중견기업의 근로자(해당 기	
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	
하 이 조에서 "핵심인력"이라	
한다)가 공제납입금을 3년 이	
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	
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	
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	
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	
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(이하	
이 조에서 "기여금"이라 한다)	
부분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	
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	

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,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<단서 신설>

기업이 폐업·해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로 기여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어 공제납입금을 3 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 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본문에 따라 세액을 감면한다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1. · 2. (생략)

②・③ (생략)